

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

## 2023제나 40 기타(금전)

담당재판부 : 제15민사부

법원사무관 고희영

직통 전화 : 02-530-1232

팩 스 :

e-mail :

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(송달과 확정내역 포함)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(<http://www.scourt.go.kr>) '나의사건검색'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(<http://www.courtauction.go.kr>) 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발송처

서울고등법원

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 
06594

3 6 3 2 2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을5길 13,

a동 103호(음내리, 한국통신사원아파트)

임그루



2 0 9 6 9 7 4 - 8 2 7 1 6 6

(민사1과 제15민사부)

2023-053-40



# 서울고등법원

## 제 15 민사부

### 판 결

사 건 2023재나40 기타(금전)

원고(재심원고) 임그루  
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, 에이동 103호(읍내리, 한국통신사원아파트)

피고(재심피고) 케이티 노동조합  
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
대표자 위원장 최장복

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. 7. 13. 선고 2009가합9702 판결

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1재나299 판결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8. 1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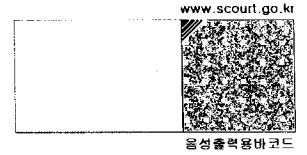
### 주 문

1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2. 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.



음성출력용바코드

## 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

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. 피고(재심피고, 이하 '피고'라고 한다)는 원고(재심원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에게 20,000,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'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'(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)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.

### 2. 직권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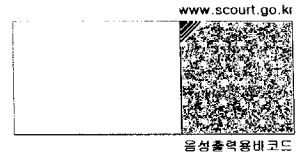
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. 재심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배척당하여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(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6재다2039 판결 등 참조).

기록에 의하면, ① 원고는 이 법원 2011. 1. 21. 선고 2010나73583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1재나49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, 대법원 2012다15435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, ② 원고는 다시 이 법원 2012재나495호로 위 2010나73583 판결 및 위 2011재나49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, 대법원 2012다108351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, ③ 원고는 다시 이 법원 2013재나2000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.



www.scourt.g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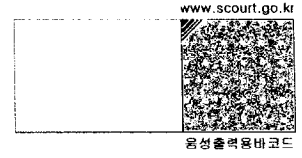
음성출력용바코드

소권 남용으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고, 대법원 2013다80924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, ④ 원고는 다시 이 법원 2014재나130호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소권 남용으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고, 대법원 2014다67478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, ⑤ 원고는 다시 이 법원 2014재나1072호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소권 남용으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고, 대법원 2015다68584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, ⑥ 원고는 다시 이 법원 2016재나35호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소권 남용으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고, 대법원 2016다4127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, ⑦ 원고는 다시 이 법원 2016재나905호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, 대법원 2017다23233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, ⑧ 원고는 다시 이 법원 2017재나698호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, 대법원 2017다53531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, ⑨ 원고는 다시 이 법원 2018재나183호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, 대법원 2018다41429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, ⑩ 원고는 다시 이 법원 2019재나50호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, 대법원 2020다254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, ⑪ 원고는 다시 이 법원 2020재나32호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소권 남용으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고, 대법원 2020다41750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, ⑫ 원고는 다시 이 법원 2021재나39호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소권 남용으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고, 대법원 2021다22046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, ⑬ 원고는 다시 이 법원 2021재나299호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. 10. 14. 소권 남용으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고(재심대상판결), 대법원 2022다4519호로 상고하였으나 2023. 1. 12. 상고가 기각된 사실, ⑭ 이에 원고는 다시 2023. 2. 9. 재심대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.



음성출력용바코드

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재심 청구를 거듭하여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,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, 민사소송법 제455조,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.

재판장

판사

윤강열

윤 강 열

판사

정현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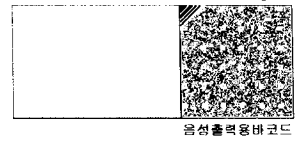
정 현 경

판사

송영복

송 영 복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# 정본입니다.

2023. 8. 18.

서울고등법원

법원사무관 고혜영



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(서울고등법원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(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).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